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~ 3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8. .
제 출 자	재 무 과 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세 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(안 제9조의2 신설).
 - 대 상 :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(결손처분액 + 채납액)이상인 고액 상습채납자
 - 공개 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: 규칙으로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69조의2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52조의2

【지방세법】 제69조의2(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가 1억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(이하 "채납정보"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▶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운영방안 통보 【도 세정과-2355(2006. 3. 7)호】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

(1)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6. 5. 8 ~ 5. 28)결과 : 없음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·상습체납자(도세·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<신 설> 제9조의2(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) ① <u>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·상습채납자(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)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